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4월 20일

나. 발 의 자 : 양진오, 강승수, 김춘남, 김태근, 김택호, 박교상,
송용자, 신문식, 장미경, 장세구, 이지연 의원(11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29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5월 10일

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양 진 오 의원

나. 제안이유

구미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지위 향상·복지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3조)
-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7조)
-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18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 기 타 : 조례안 예고(2021. 4. 21.~ 4. 28.)결과 의견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진 상

○ 본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은,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1)의 규정에 의거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발의된 것으로,
- 도내 23개 지자체 중 15개 시·군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인 조례이며, 관내 농가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교육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여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